

1998. 11. 9.

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[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]

[충주시제2의전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]

총 무 위 원 회

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자
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 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 조례안	'98. 11. 2	'98. 11. 3	'98. 11. 5	'98. 11. 5	총무담당관
충주시제2의전국법국민 추진위원회조례안	'98. 11. 4	'98. 11. 4	"	"	사회진흥과

2. 제안설명요지

>1.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와
-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.

2) 주요골자

- 근무상한연령에 따른 정년연장제도 폐지
- 직권면직 시킬수 있는 사항 변경
- 휴직을 명할수 있는 내용과 휴직기간, 휴직의 효력등을 조정, 신설

나. 충주시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제2의 전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2의 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
- 충주시 제2의 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) 주요골자

- 위원회는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제2의 전국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으며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수 있도록 하였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-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
-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,
-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·군에 시달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임.

나. 충주시제2의전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

- 제2의 전국법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1998. 10. 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
- 제2의 전국을 위한 국정 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제2의 전국법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
- 제2의 전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·군단위의 활동방향을 제시 운영하기 위하여,
- 정부의 제2의 전국추진 지침을 각 시·군에 시달 이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.

4. 질의·답변 요지

가.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{ 질의 }

- 부칙 제2항에 단축 퇴직대상자가 각각 다른 이유는?

☞ 답변

- 6개월 및 9개월 각각 단축하는데 정년을 시차를 두고 적용 점차적으로 단축하는 내용

{ 질의 }
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에 기소란?

☞ 답변

- 구속 및 불구속 모두를 말함.

[질의]

- 부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?

☞ 답변

- 상위법의 준칙에 맞추어서 된것임.

[질의]

- 현재 정원외 관리자도 이법에 적용되는지?

☞ 답변

- 정원외 관리자도 이 조례에 해당됨.

[질의]

- 제11조 2의 휴직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력에 포함되는지?

☞ 답변

- 경력은 2가지가 있는데 포함된다.

4. 충주시제2의 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

[질의]

- 제3조 제4항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관변단체도 포함되는지?

☞ 답변

- 선정할 수 있다.

[질의]

- 간담회에서 25인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30인이내로 하는 이유?

☞ 답변

- 읍·면·동 수를 감안하여 증원 했음.

{ 질의 }

- 제10조 수당에서 공무원도 지급하는지?

☞ 답변

- 공무원은 지급이 않됨.

{ 질의 }

- 제3조 구성에서 부위원장은 선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삽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?

☞ 답변

- 수정하여 삽입 하겠음.

{ 질의 }

- 주관 부서가 사회진흥과이면 주관 단체는?

☞ 답변

-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담당할 계획

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지방법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나. 충주시제2의건국민주진위원회조례안 : 수정의결(별지)

6. 봉 임

가).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나). 충주시제2의건국법국민주진위원회조례안

[별지]

■ 조례명 : 충주시제2의전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

충주시제2의전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다음에 제3항으로 '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임한다'를 삽입하고 제3조 '제3항'을 제4항'으로 '제4항'을 제5항'으로 하고, 제3조제3항제1호 '시의회부의장, 시의회상임위원장'을 '시의회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자'로 한다.

< 수정안 대비표 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 (구성) ① - ② (생략) <u>(신설)</u> <u>③ (생략)</u> 1. <u>시의회부의장, 시의회상임위원장</u> 2 - 4. (생략) <u>④ (생략)</u></p>	<p>제3조 (구성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임 한다.</u> <u>④ (현행과 같음)</u> 1. <u>시의회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자</u> 2 - 4. (현행과 같음). <u>⑤ (현행과 같음)</u></p>